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2-94

제출년월일: 2022. 9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 관리 관련 조문신설「지역사랑상품권법」개정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(조례 제3조의2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「지역사랑상품권법」제4조의2(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)
- 2) 지역사랑상품권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협조 요청 (서울특별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-21213, 2022. 4. 28.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7. 28. ~ 8. 1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(2022. 9. 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)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·판매·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구금 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신탁계약 체결의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조의2(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
	관리)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
	항 본문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
	을 발행·판매·환전하기 위한
	자금을 보관・관리하기 위한 계
	<u>정을</u> 구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
	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
	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
	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
	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업자
	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
	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
	신탁계약 체결의 주체는 구청장
	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.
	부 칙
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음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민선복
연 락 처	02-3153-8572